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7호)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91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7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비교	7
2. 검토의견	12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9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24
1. 정의	24
2.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	28
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자립지원 실태조사 ...	29
4. 중앙 및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32
5. 중앙 및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35
6.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39
7. 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43
8. 장애인자립친화도시	47
9. 거주시설 전환 등	49

I. 개요

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8.
- (3) 회 부 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3) 주거 전환지원을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 (4)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5)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6)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발굴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발달재활 및 발달지원 연계 제공, 주거·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7)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제공, 주거 전환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자립 준비 지원을 제공함(안 제24조 및 제25조).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장애인의 역량 강화,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장애인의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정의함(안 제32조).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거주시설 전환 상황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59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6.
- (3) 회 부 일 : 2024. 8. 7.

나.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및 제10조).
-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주거유지 지원 서

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6) 시장등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3조 및 제24조).

(7)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비교

□ 양 제정안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려는 것으로,

김예지의원안은 총 6개의 장, 39개 조문, 최보윤의원안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양 제정안의 구성 체계 >

김예지의원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보윤의원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제5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제5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	제7조	장애인 보호자의 협력
	제8조	장애인 보호자의 책무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김예지의원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보윤의원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장 기본계획 등 자립지원 체계	제10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제10조	자립 지원 실태조사
	제11조	자립지원 실태조사	제11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
	제12조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 원위원회	제12조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제13조	자립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13조	자립 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14조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 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 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장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제16조	상담 및 정보제공	제16조	상담 및 정보제공
	제17조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제17조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제18조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제18조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제19조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제19조	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제20조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제20조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제21조	이의신청	제21조	이의신청
	제22조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제22조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제23조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제23조	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
	제24조	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	제24조	자립 준비 지원
	제25조	자립 준비 지원	제25조	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제26조	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제26조	지역사회 자립장애인에 대한 지원

김예지의원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보윤의원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7조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27조	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제28조	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제28조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제29조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제29조	자립지원 상황 평가·보고
	제30조	자립지원 상황 평가·보고	제30조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제31조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제31조	지도와 감독
	제32조	장애인자립친화도시	제32조	보고와 검사
제4장 거주시설 전환	제33조	거주시설 전환	제33조	벌칙
	제34조	거주시설 전환 평가	제34조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35조	지도와 감독	제35조	과태료
	제36조	보고와 검사		-
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
	제38조	양벌규정		-
	제39조	과태료		-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2년)		
	제2조	시범사업		
	제3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주1): 음영 표기는 보칙과 벌칙 규정을 제외한 실체규정 중 양 제정안 간 내용상 차이가 있는 조문임.

□ 양 제정안은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및 관련 절차,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법적근거와 관련 정책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양 제정안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양 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제 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목 적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정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하는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그 밖에 집단거주형태의 사회복지시설 제외 -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그 밖에 집단거주형태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 주거 전환지원: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주택에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거주시설과 집단적 거주 형태의 시설 등 제외, 집단적 거주형태의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주거 전환지원: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27조의

구 분	김예지의의원안	최보윤의원안
	것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지역사회 자립지원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시행 • 3년 단위 실태조사 • 국무총리 소속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 시·군·구청장은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와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사항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센터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시행 • 3년 단위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앙 및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절차 및 내용	• 상담 및 정보제공 • 자립 지원의 신청·대상자 발굴·선정 •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 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정보제공 • 자립 지원의 신청·대상자 확인·선정 •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 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구 분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 자립지원 상황 평가·보고 • 장애인자립친화도시	• 자립지원 상황 평가 및 보고
거주시설 전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시설 전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거주시설 전환 상황 평가 후, 결과 보고	-

주1): 음영 표기는 양 제정안 간 차이가 있는 조문임.

2. 검토의견

□ 2008년 12월, 우리 국회가 비준하여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¹⁾ 제19조에는 장애인이 모든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립적 생활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 지원서비스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포괄적 해석과 당사국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 등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제5호에서는 협약 제19조와 관련하여,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1)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뉴욕의 UN본부에서 개최된 제61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즉각적 의무,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예산적, 사법적 조치 요구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조문 및 일반논평 5호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

46. 당사국은 장애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제거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즉각적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가령, 장애인이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부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주거를 확보하거나 거처를 임차하거나 독립에 필요한 일반적 주류 시설·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등을 막는 정책·법률·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49. 19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의 존중이란 당사국이 시설입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신규 시설도 당사국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의 개조 또한 시설 거주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급한 조치가 아닌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시설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시설 거주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 시설에서 확장된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즉 개인적 생활의 모습(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54. 실현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협약에 포함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적, 행정적, 예산적, 사법적, 체계적, 촉진적 및 기타 조치를 도모·촉진·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실현의 의무는 접근 불가능한 주거, 장애 지원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 지역사회 내 접근 불가능한 시설·상품·서비스

스,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막는 현실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 이에 우리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화 및 전국적 확대를 도모하며,

기존 거주시설과 관련해서는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향후,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것을 표명한 바 있음.

□ 지난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는 탈시설 또는 지역사회 자립에 관한 제정안 3건이 발의되었으며, 이를 통합·조정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마련되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²⁾

< 제21대 국회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212426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10633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118026)

주 1): 괄호안은 의안번호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 후, 정리

2)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11.24.),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2.4.26.)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11.21.)

□ 현재 계류 중인 양 제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 및 서비스 등의 법적근거와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사회에 통합·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음.

□ 참고로, 양 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대안으로 마련되었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과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절차 및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2026년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상당 부분을 구체화하여 담고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요 현황).

< 양 제정안 자립 지원 절차와 시범사업 비교 >

진행절차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시범사업 절차
자립 지원 신청	자립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시·군·구에 신청 (안 제17조)	자립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시장등에 신청 (안 제17조)	장애인과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나, 주로 자립조사에 따라 본인 의사가 확인된 장애인을 발굴하여 대상자 선정 중
자립조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역통합지원센터는 신청한 장애인 및 시설장애인 등을 조사하고 결과 작성 - 시·군·구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안 제19조, 제20조)	- 광역통합지원센터는 신청한 장애인 및 시설장애인 등을 조사하고 결과 작성 - 시장등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안 제19조, 제20조)	- 수행기관(전담인력)이 시설장애인 등을 조사하고 결과 작성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는 조사 결과,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지역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는 지역장애인 자립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안 제22조)	- 광역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안 제22조)	- 수행기관(전담인력)이 개인별 장애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는 지역장애인 자립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발달 지원 연계, 복지지원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안 제27조)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발달 지원 연계, 복지지원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안 제26조)	수행기관(전담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발달 지원 연계, 복지지원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주거 관련 서비스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에게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안 제29조)	시장등은 자가주택, 민간임대주택, 장애인주택 등에서 장애인이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 (안 제28조)	수행기관(전담인력)이 장애인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에게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상황 평가·보고	지역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 (안 제30조)	광역통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등에 보고 (안 제29조)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통합지원센터)가 평가하여 복지부 보고 및 참여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 양 제정안은 목적, 기본이념, 전달체계, 자립지원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제명, ‘거주시설’ 및 ‘주거 전환지원’ 등 용어의 정의, 중앙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설치 유무,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명칭, 거주시설 전환에 관한 규정 유무, 장애인자립친화도시 규정 유무 등 다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함.

< 양 제정안 간 주요 차이점 비교 >

구 분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제 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의	‘지역사회 자립’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그 밖에 집단거주형태의 장애인생활시설을 규정	‘지역사회 자립’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거주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적 거주 형태의 시설을 규정

구 분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 ‘주거 전환지원’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이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 ‘주거 전환지원’을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이 경우, 장애인 자신의 주택은 제외됨).
자립지원 추진체계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두도록 함(이 경우,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의 역할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 외 사항	• 거주시설 전환 및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자립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 관련 사항 미 규정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김예지의원안·최보윤의원안) 동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동의함.
-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2026년 본사업 전환을 위해 동 법안이 필요함.
- 다만, (김예지의원안) 거주시설 범위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까지 확대(안 제2조), 국무총리 소속 별도 위원회 설치(안 제12조), 장애인자립친화도시(안 제32조), 거주시설 전환(안 제4장) 등의 내용은 추가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보윤의원안) ‘지역사회 자립’에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적 거주 형태의 시설 등 제외(안 제2조)는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행정안전부

- (김예지의원안) 안 제12조의 국무총리 소속 자립지원위원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우선 고려할 필요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 유사 위원회와의 연계·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

다. 장애인단체: 찬성 측³⁾

□ 양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장애인단체의 주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 안 제2조: 탈시설 권리 정의에 추가 필요, 거주시설 범위에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포함 필요 - 안 제6조: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확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 필요	- 안 제2조: 거주시설 범위에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포함 필요,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포함 필요 - 안 제5조: 보호자에 의한 대체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광역통합지원센터에서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안 제14조: 중앙센터 업무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통합을 위한 주거지원 영향평가서 작성’ 추가 필요
안 제7조: 의료적 필요도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안 제17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대리’ 신청으로 수정 필요

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 제12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중앙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2항 삭제 필요, 시설수용생존자, 탈시설 당사자 등 참여 명시	안 제18조: 자립지원 대기 기한을 설정(24개월) 필요
안 제28조: 장애인주택을 어느 정도 규모로 제공할 것인지 수치 등으로 구체화 필요,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의 내용 구체화 필요	안 제27조: 장애인주택을 어느 정도 규모로 제공할 것인지 수치 등으로 구체화 필요, 주거생활서비스의 내용 구체화 필요
안 제4장: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명시 필요	

라. 장애인단체: 반대 측⁴⁾

□ 양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장애인단체의 주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동 법안은 시설을 지역사회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의사를 문제시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삶만이 인간다움 삶의 보장이고 완전한 사회통합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시설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자립지원이 필요한 재가장애인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 법률안 명칭 관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 수정(지역사회, 주거전환 삭제) • 안 제2조 관련, 시설이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의한 단서 조항 삭제(제2호), 거주시설 정의 규정 삭제(제3호), ‘장애인주택’은 사회적 낙인을 조장할 수 있어 용어수정(제4호, 장애인주택→주택) 필요	
• 안 제5조: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미 모호(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으로 해석 가능)	• 안 제15조: 신규 센터 설치보다 현재 운영 중인 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를 활용할 필요
• 안 제16조: 시설장은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단기체험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삭제 필요	• 안 제16조: 관할 거주시설 연 1회 방문(제2항), 상담 과정에 동료상담사 참여(제4항), 시설장의 자립지원에 관한 의무(제5항) 등 삭제 필요
• 안 제17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익 침해 우려	
• 안 제19조: 자립욕구조사의 대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 삭제 필요	• 안 제19조: 자립욕구조사의 대상으로 시설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 삭제(제2항), 광역센터 조사 시 보호자의 지원 내용 추가(제4항) 필요
• 안 33조, 34조: 거주시설 전환 내용과 방식 및 지원 등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시설의 전환 및 평가만을 강제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과 ‘거주시설의 전환 및 전환 평가’ 간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장애인거주시설만을 특정하여 전환과 평가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삭제 필요	
---	--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의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자립”이란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그 밖에 집단거주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 3.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그 밖에 집단거주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4. “주거 전환지원”이란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 또는 제28조의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자립”이란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거주시설과 집단적 거주 형태의 시설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집단적 거주 형태의 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거 전환지원”이란 제20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27조의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2호 및 제3호) 김예지의원안과 최보윤의원안에서는 ‘지역사회 자립’을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만, 최보윤의원안에서는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되지 않는 ‘거주시설’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적 거주 형태의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예지의원안에서는 이에 더해 정신건강증진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질환자⁵⁾를 대상으로 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 및 치료 등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⁶⁾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일상생활보다는 치료가 주목적인 시설로 보이므로,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되지 않는 ‘거주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최보윤의원안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 시 용어 사용상 혼선이 우려됨.

현행 「장애인복지법」	최보윤의원안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아울러 지역사회 자립에서 제외되는 거주시설 중 상당 부분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므로 운영자 및 이용자, 가족 등 보호자, 종사자 등의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로부터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4호) 김예지의원안에서는 ‘주거 전환지원’을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 또는 장

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한편,

최보운의원안에서는 ‘주거 전환 지원’을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경우, 김예지의원안에 따르면, ‘자신의 주택과 장애인주택’, 최보운의원안에 따르면, ‘장애인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주거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의 거주 형태(자가 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

김예지의원안
제7조(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김예지의원안에서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 등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의 목적이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전환을 지원함에 있음을 고려하면,

안 제7조에서 ‘의료적 필요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다소 포괄적이어서 제정안을 장애인 복지 일반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원의 범위를 주거서비스 관련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거나,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⁷⁾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자립지원 실태조사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현황 및 실태 등에	제9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자립 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양 제정안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체계 및 과학적 정책 실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양 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⁸⁾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장애인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수립하므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 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중복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

8)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로 보임.

최보윤의원안에서는 이러한 중복문제 해결을 확대하여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경우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⁹⁾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입법례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가적으로 김예지의원안 제10조제2항제3호와 제4호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양 및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제 12조(중양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양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자립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자립지원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3조(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이하 “지역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며 위	제 11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2조(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이하 “지역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원장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김예지의원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제11조10)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자립지원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최보운의원안에서는 별도의 중앙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김예지의원안의 경우 다른 장애인 관련 정책들과의 연계를 고려하

- 10)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 장애인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간 상충 가능성이 있어 보임.¹¹⁾

- 한편, 김예지의원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한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보윤의원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의 재량성 유무와 설치대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지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그 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할 경우 중복성과 상충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11) 다만, 행정안전부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김예지의원안에 대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되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5. 중앙 및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김예지의원안	최보운의원안
제14조(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지원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인력의 교육·연수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통계 및 관련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¹²⁾는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인력의 교육·연수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15조(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및 자립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2. 제19조제1항 따른 자립조사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립육구조사
 4.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5.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정착 상황 평가와 사후 관리
 6. 거주시설 전환 상황 평가
 7.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상황 평가
 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과 정보제공
 9.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을 위한 관련 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 간 연계
 10. 시·도지사가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

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15조(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광역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따른 자립조사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립육구조사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자립 및 주거 전환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4.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5.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정착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
 6.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상황 평가
 7.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 복지지원 정보 제공, 관련 기관 간 연계
 8. 시·도지사가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통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거주시설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통합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u>시·도지사는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5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를 시·군·구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광역통합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u>시·도지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5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양 제정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12) 제4항과 주체에 관한 용어 통일 필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는 지역 또는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방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두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조사에서부터 전환 및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양 제정안 모두 중앙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의 일부가 아닌 운영 전부를 위탁하는 형태로 조문화되어 있어 설치된 조직과 운영하는 조직이 별개로 양립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으로, 설치와 운영 모두에 대한 위탁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센터 역시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위탁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선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중앙과 지방센터가 법 집행 단계에서 다시 통합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방센터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6.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제19조(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u>시장·군수·구청장</u>은 제17조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지원 수급자격,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이하 “자립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은 자립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조사(이하 “자립욕구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③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제17조제1항의 장애인을 말하며, 제2항에 따라 자립욕구조사 대상으로 발굴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장애특성	제19조(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u>시장등</u>은 제17조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 지원 수급 자격,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이하 “자립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u>시장등</u>은 자립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 조사(이하 “자립욕구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자립욕구조사는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③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제17조제1항의 장애인을 말하며, 제2항에 따라 자립욕구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장애특성

3. 신청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신청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u>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보호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자립지원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u>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3. 신청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재산, 건강 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u>시장등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보호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자립 지원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u>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	---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이 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양 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방센터에 의뢰하여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립조사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과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임.
- 자립욕구조사는 자립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김예지의원안 제19조제7항에서는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조사·질문을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방센터의 장이 자립지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지방센터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할 뿐, 최종적인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음¹³⁾을 고려하면, 자립지원 신청에 대한 각하 주체를 지방센터의 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양 제정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등은 지방센터에 의무적으로 자립 지원 수급 자격,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센터의 설치는 재량 사항이므로 표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제 15조(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u>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통합지원센터”라 한다)</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5조(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u>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광역통합지원센터”라 한다)</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3) 김예지의원안 제20조(자립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이하 “자립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김예지의원안	최보윤의원안
제28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하여 <u>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u>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2항에 따른 입주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u>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이용기준, 제3항에 따른 입주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절차, 제4항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제27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한 <u>장애인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u>제28조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이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① 시장등은 자가주택, 민간임대주택, 제27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주택 등에서 장애인이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u>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 양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주택을 운영 또는 제공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등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 기존의 거주시설과 같이 제3자인 관리·운영 주체가 여러 장애인을 한 곳에서 거주하게 하는 형식을 지양하는 주거 제공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별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주택을 운영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김예지의원안에서는 ‘장애인주택 운영’, 최보운의원안에서는 ‘장애인주택 제공’으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양 제정안 모두 제2항에서는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또한, 구체적인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김예지의원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주택에의 입주 및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을 다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있음.

그런데 최보윤의원안에서는 시장등이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 김예지의원안의 경우, ① ‘주거지원센터’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②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는 고유의 특성과 전달체계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에 위탁 가능성을 두는 규정은 적절한 서비스 제공 능력 측면에서 실무적 검토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¹⁴⁾
- 추가적으로 김예지의원안 제28조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제2항에 따른 입주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14) 인천광역시에서도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 주거지원센터(안 제28조, 국토부 소관)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안 제29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이 우려되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등의 제공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항의 인용조문은 ‘제3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김예지의원안 제28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입주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아울러, 양 제정안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주택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그 실제 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주택 등에 대한 관리 권한 소재와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8. 장애인자립친화도시

김예지의원안

제32조(장애인자립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장애인의 역량 강화,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장애인의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장애인자립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군·구를 장애인자립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자립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김예지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장애인의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장애인자립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편의증진 등 접근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장애인 평등 가치를 지역사회에서부터 자리 잡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는 현재 운영 중인 여성친화도시가 있는바, 그 운영을 살펴보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 지역별 조례가 대부분 유사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이 단편적인 시설 개선 또는 확충에만 한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는 지적¹⁵⁾이 있음을 참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리·감독, 재정상 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명칭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자립친화도시’라는 표현은 도시로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자립친화마을’이라는 용어 사용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친화도시, 국무조정실 소관 청년친화도시, 보건복지부 소관 고령친화도시 등이 지정되어 있음(참고자료 2: 주요 친화도시 관련 현황).

15) 국회입법조사처,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7.1.9.

9. 거주시설 전환 등

김예지의원안
제33조(거주시설 전환) ① 거주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시설 전환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거주시설 전환 평가)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매년 관할 거주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거주시설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는 해당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의사 등에 관한 조사 결과, 거주시설의 준비 상황 및 제33조제2항의 지원에 따른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김예지의원안은 거주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그 밖에 집단거주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장애인 생활시설'로 정의하고(제정안 제2조제3호),

거주시설의 장이 거주시설 전환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전환 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국에 1,5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7,352명의 장애인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 현황 >

구분	개소 수(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52
유형별장애인거주시설	35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9
단기거주시설	167
공동생활가정	746
합계	1,529

자료: 보건복지부, 2023.12.

< 장애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수 >

장애유형	입소자 수(명)
지체	1,074(4%)
뇌병변	2,222(8%)
시각	852(3%)
청각	205(0.8%)
언어	38(0.2%)
발달(지적·자폐성)	22,559(82.5%)
정신	241(0.9%)
기타	161(0.6%)
합계	27,352(100%)

자료: 보건복지부, 2023.12.

- 제정안은 이 같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전환 및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대기수요(1,370명)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신청 등 현황 >

구분	신청자	적격자				부적격자
인원수 (명)	4,520	소계	입소 후 퇴소 (사망, 가정복지, 입원 등)	현재 입소자	대기자	2,016
		2,504	152	982	1,370	

주1): 대기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추출자료로 시설 입소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시설에 입소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수

자료: 보건복지부, 2024.8.

②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대안으로 마련되었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관계 단체의 반대의견이 수용되어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신규 설치 제한이나 단계적 축소, 폐쇄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주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연착륙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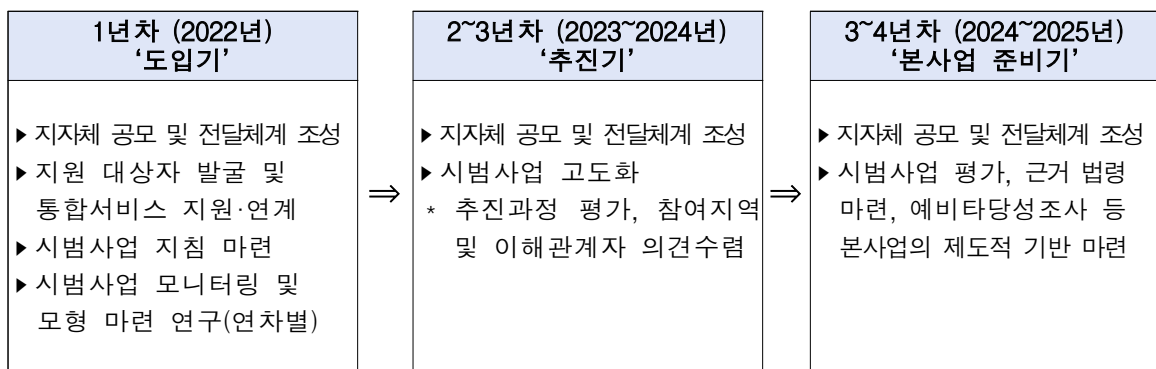
□ 사업 목표

-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26년)을 위한 ①자립 효과 분석·평가, ②장애 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③지원 대상 규모 추계 등

□ 주요내용

- (사업대상)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광역시 7, 기초 23) 관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재가장애인
 - 시설장애인과 함께,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을 조기 발굴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강화
 - * 보호자의 장기 부재(사망, 질병 등),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 대기 등
- (사업예산) ('22) 22억원 → ('23) 48억원 → ('24) 60억원 (국비 기준)
- (자립현황) 171명(시설 131명, 재가 40명 / 발달장애인 138명 / 8월 현재)
- (주택) 264호(국토부(LH),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 8월 현재)
- (사업내용)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거, 공적서비스 통합 연계*
 - *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급여), 장애인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건강검진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 재산관리서비스 등
- (사업기간) '22~'25년(4년간 총 600명 자립 목표) ※ '26년 본사업 전환

<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주요 친화도시 관련 현황〉

구 분	여성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개념	지역정책과 발전과정 에 여성과 남성이 균 형 있게 참여하여 여 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을 지정	지역정책과 발전과정 에 청년의 참여를 촉 진하고, 청년발전, 청 년의 역량 강화 및 삶 의 질 향상 등이 구현 되도록 정책을 운영하 는 지역을 지정	지역정책과 발전과정 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 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을 지정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5.7.1. 시행)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23.9.22. 시행)	「노인복지법」 제4조의3 (‘26.1.24. 시행)
예산	‘24년 131백만원	‘24년 198백만원	-
사업 내용	전문가 컨설팅 등	지자체 대상 컨설팅, 성과 점검 등	-
지정 현황	104개(‘23.12월 기준)	‘24년부터 연 3~5개 지역을 지정하여, ’28년까지 25개 내외 (광역 지자체별 평균 1~2개 내외) 지역 지정	58개(‘24.7월 기준) *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아닌, WHO에서 운영하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통해 인증받은 도시 기준
지정 방식	시·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제출 → 시·도 추천 → 여가부 심사·지정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 (지자체) → 조성계획 검토 및 심의 (청년친화도시 심의위원회) → 청년친화도시 지정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자료: 보건복지부